

보도자료



보도일	2017. 2. 16.(목)		
배포일	2017. 2. 16.(목)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기획처	문의	기획처(880-1064)

서울대 이사장에 이홍훈 前대법관 선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2017년 2월 16일(목) 2017년 1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이홍훈 前대법관(71)을 선출했다. 이사장 임기는 이사 임기를 마치는 2019년 1월까지이다. (이사장 임기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이사 재임 동안 이사장을 맡게 된다)

□ 이홍훈 신임 이사장은 1977년 판사 임용 이후 서울 중앙지법원장, 수원지법 원장 등을 지내며 2011년 대법관 퇴임시까지 34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대한민국 사법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이홍훈 이사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 이사장 관련 참고 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서울대학교 정관>

제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 주재한다